NEWSLETTER956
Mar 6, 2024

SEIN 세인관세법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월별납부 승인 요건 신설 -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위한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23-70호, 2023.12.27.)의 개정(안)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II. 개정내용

ㅇ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생 략)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최근 2년간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III. 시행일자

2024. 0월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신상애 주무관(042-481-7644)
ㅇ 제출기한 : 2024. 03. 20.
ㅇ 제출방법 : 이메일(shinsang@korea.kr), 팩스(042-481-7869)
ㅇ 제출양식

수정안	수정 사유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Contact

정현욱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이지원 Asso.
T 070-4353-5150
E jwlee2@esein.co.kr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